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 주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음료신문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 주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음료신문



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13 : 30	등 록
14 : 00	개 회 식
	개 회 사 신경림 의원
	환 영 사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축 사
14 : 30	주제발표
	식품 이물 의무신고제의 시행 현황과 성과 (손문기 국장, 식약청 식품안전국)
	식품 이물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박영식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 이물 의무보고제도의 비용편익분석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15 : 30	종합토론 - 좌 장 : 신동화 교수 (한국식품안전협회장) - 토론자 : 송성완 부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신용묵 국장 (한국소비자원 식품안전국) 이군호 사장 (식품음료신문) 조윤미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최지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상도 교수 (중앙대 식품공학과) 홍주식 센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 40	질의 및 응답
17 : 00	폐 회

목 차



* 개 회 사	신경림 의원	1
* 환 영 사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3
* 주제발표		
1. 식품 이물 의무신고제의 시행 현황과 성과		
손문기 국장 (식약청 식품안전국)		5
2. 식품 이물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박영식 교수 (고려대학교)		21
3. 식품 이물 의무보고제도의 비용편익분석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41



*** 좌 장** - 신동화 교수 (한국식품안전협회장)

* 토론내용	
- 송성완 부장 (한국식품산업협회)	59
- 신용묵 국장 (한국소비자원 식품안전국)	65
- 이군호 사장 (식품음료신문)	71
- 조윤미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77
- 최지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3
- 하상도 교수 (중앙대 식품공학과)	87
- 홍주식 센터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3

개 회 사

신 경 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식품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국회 예산 심의로 더욱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산업이 발전할수록 대량으로 식품을 생산하게 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 이물 관련 식품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경악시킨 ‘쥐머리 새우깡’ 사건 이후에도 애벌레, 쌀벌레 등 혐오스런 이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터지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는 개선책이 마련되고, 이물 관리 대책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었냐는 듯 또 다시 식품 사고가 반복됩니다. 꼭 사고가 터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평소에 이물 관리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이물관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2010년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 마련된 것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이 배포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법규와 기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물 관리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청장님과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를 해 주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님과 고려대학교 박영식 교수님, 양승룡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진행하여주실 전북대학교 신동화 명예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발전적인 이물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국회의원 신 경 립

환영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식품 이물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신경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를 하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손문기 국장님과 고려대학교 박영식 교수님과 양승룡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실 신동화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도시화,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력과 재정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제의 운용과 사후평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고가 자주 일어났고, 이로 인해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식품 이물 발생에 대한 의무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크게 보강하여 이물 발생빈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생산 체제에서 1 ppt(백만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여도 이물의 완전제거는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물은 혐오성 물질이지만 위해성 물질이 아니므로 완전제거를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물 발생시 배상 교환 기준을 정해 해결합니다.



그동안 이물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식품의 이물 혼입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식품 이물 의무신고제에 따른 행정 부담과 식품산업의 과다비용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 요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규제에 편승한 블랙컨슈머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진 식품안전 관리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금년도 연구과제로 ‘식품 이물질 관리제도의 비용편익분석 연구’를 고려대학교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박영식 교수와 식품자원경제학과의 양승용 교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이분들의 연구결과와 식약청의 시행 현황과 성과를 들은 후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해 오신 신동화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이물관리체제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바라며, 이 토론회를 후원하여 주신 식품의약품 안전청 이희성 청장님과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신경림 의원실 여러분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2년 11월 5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1. 식품 이물 의무신고제의 시행 현황과 성과

식약청 식품안전국 손 문 기 국장





Profile

손 문 기

학 력

경기고 졸업(1982)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198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학 이학석사(1989)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학 이학박사(1996)

경 력

식품안전국장 고위공무원

식품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식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식품안전기준팀장, 식중독예방관리팀장 기술서기관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 총괄팀장 기술서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과장 기술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사무관

WHO/FA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사무국 (이태리 로마) 파견관 식품
위생사무관

보건복지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실장 식품위생사무관

식품의 이물관리 정책 및 성과

2012.11.5



1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목 차

- 1 배경
- 2 그 간의 성과
- 3 향후 정책방향



2

1 배경

배경

**식품 이물 사건의 증가 및 사회적 이슈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증폭**

- '08.2. 과자에서 쥐, '08.3. 참치통조림에서 칼날, '09.3. 음료에서 유리조각

**업계의 안이한 위생 관리 의식과 음성적 관행 등을
개선하여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소비자 신뢰회복 필요**

- '08. 3. 식품 이물 사건·사고 발생 및 사회 이슈화
- '08. 5.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시행
- '08.10.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구축
- '09. 2.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 [제46조 영업자 이물 보고 의무화]
- '09.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제60조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 '10. 1.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10.1.4)
- '11. 1. 소비자 신고센터 신고자(소비자) 실명 인증제도 도입
- '11. 8. 이물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개시
- '11.12.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 보고 대상 이물 범위 완화 및 판정방법 개선('11.12.29)
- '11. 12.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 ※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이물 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09.2)

시행규칙제60조 보고대상 이물의 종류 등 규정('09.8)

식품 제조·판매업자등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보고토록 규정

☞ 이물 미보고·지연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및 100만원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98조 벌칙

-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영업자)
-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비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고시 제2011-81호, '11.12.)」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①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

②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③ 섭취 부적절한 이물

- ☞ 보고대상이물(위해) : 3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금속성 재질의 물질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이물의 범위(2.0mm)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보다 더 포괄적임

- ☞ 보고대상제외이물 : 머리카락, 실, 비닐, 약 2~3mm 크기 금속성 이물 등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9

제외국의 이물 정의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우리나라

식품의 성분이 아닌
위해, 혐오, 섭취 부적절한 것

일본

건강 위해물질로
고배율 현미경 사용이 필요 없는 것

미국

비의도적, 비위생적
7mm이상의 건강위해 물질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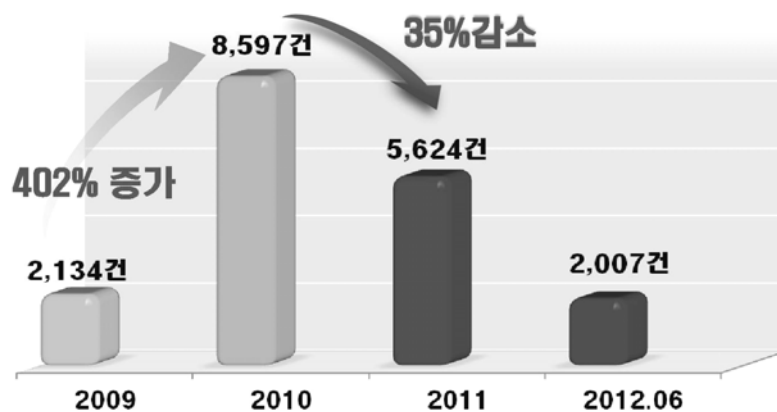
식품안전이나, 식품적합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물질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10

2 그 간의 성과

연도별 이물보고(신고)현황



연도별 이물보고(신고)현황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증가추이]

- ✓ 이물 발생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 및 지속적인 홍보로 보고/신고 증가
-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인터넷)을 이용한 보고/신고 편이성 향상

[감소추이]

- ✓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자구책 강화 (시설투자, 기술력 강화)
- ✓ 식약청, 지자체의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병행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13
13

보고(신고)된 이물의 종류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12.06 이물별 보고(신고)건수는 벌레 > 금속 > 곰팡이 > 플라스틱 > 유리 순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14

이물관리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15

「이물관리 업무매뉴얼」('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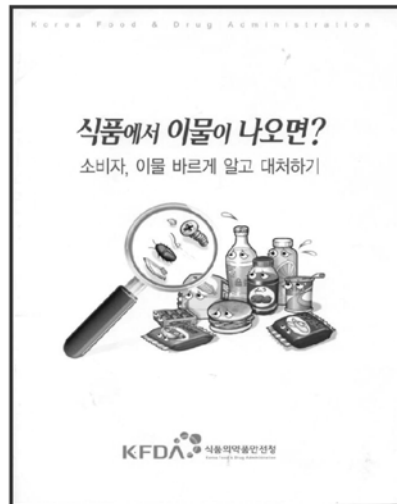
- 이물 원인조사기관(식약청, 지자체)의 이물 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작 · 배포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16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11)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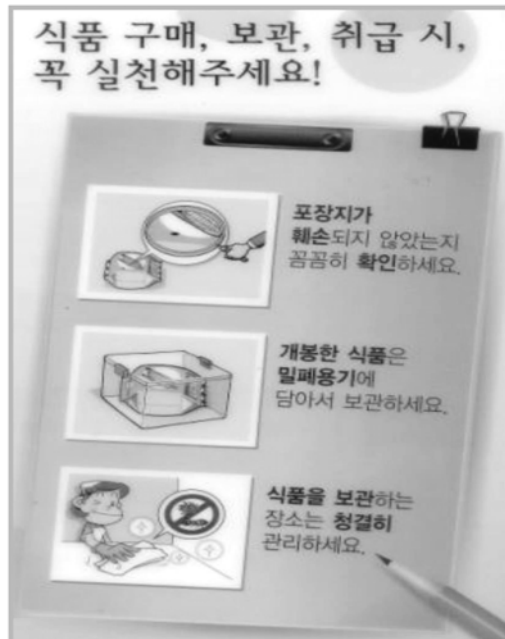
이물 신고 처리현황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물 신고시 소비자 주의사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19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3

향후 추진방향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20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분석을 통해

근본적 이물관리 개선 추진

- 표준화된 조사기법, 규정, 조사사례 등 조사기관간 공유
- 이물혼입 원인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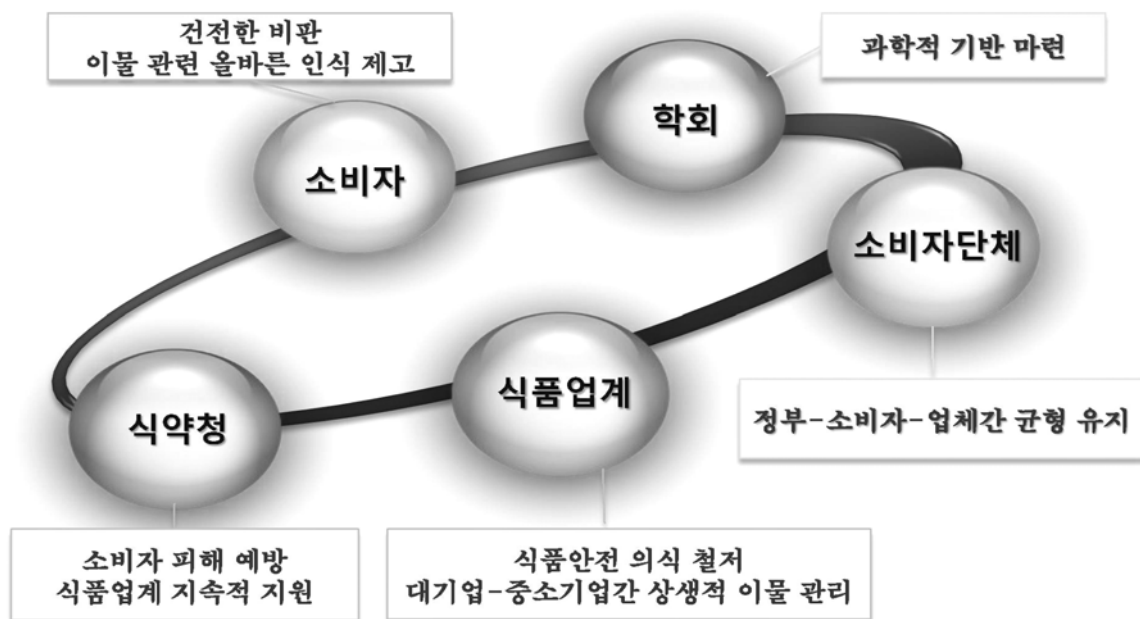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相生)적 이물관리 기반 마련

업체 자율적 이물 관리 환경 조성

- 업체 자율 이물 관리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식품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체 기술지원 지속 추진 등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제고 및 신뢰도 향상

- 이물별 혼입원인, 식품보관 사용법 등 홍보
- 이물관리 현황 등 지속적 정보제공 등



감사합니다



25

2. 식품 이물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고려대학교 박 영 식 교수





Profile

박 영 식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발효공학 전공(공학박사)

경 력

기획재정부 경기, 제주지방 연구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KS규격 심사위원회 식품부분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신기술(NIT) 및 GH 제품 심사위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교수 재직 중

보건복지부 부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정책팀장(수석연구원)



목 차

- 1 개선방안 토론회의 목적
- 2 국내외 이물관리제도 체계 비교
- 3 현행 이물관리제도의 문제점
- 4 현실적 관리방안 제안



I 개선방안 토론회의 목적

소비자 불만사례 신고 현황-2011년 소비자단체 협의회 보고서

클레임 유형별 분류		발생 이물질 분포	
이물질 혼입	12.6%	벌레:	34.6%
		금속,유리,철,프라스틱:	23.6%
		비닐, 고무 :	22.6%
		침전물:	10.0%
관련정보 제공 불만족	33.5%	머리카락,털,뼈:	9.3%
이상중세	9.3%		
품질불량	8.5%		

혼입단계별, 년도별 이물발생 현황

연도	합계	제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기타
2008	1,949	411 (21.1%)	377 (19.3%)	632 (32.4%)	529 (27.1%)
2009	2,134	326 (15.3%)	414 (19.4%)	782 (36.6%)	602 (28.2%)
2010	4,217	307 (9.3%)	305 (9.3%)	755 (23.0%)	2,850 (67.6%)
2011	2,615	292 (11.7%)	405 (15.5%)	681 (26.0%)	1,237 (47.3%)
2012.6	2,007	133 (7.6%)	180 (10.3%)	364 (20.7%)	1,079 (61.5%)

식품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는?

필요성

- [불가능한 완전 무결점 제품 요구에 의한 산업계 신뢰도 손상]
- [필요성이 떨어지는 시설투자에 의한 생산비 증가]
- [직접경비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산업계 전반에 걸친 국제 신인도 저하에 따른 세계화의 걸림 돌]
- [제도시행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 방법

- [소비자 인지도 조사 및 사회적 후생변화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개발, 주부 200명 이상 대상, 설문내용 분석
-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식품산업 추가비용 파악과 비용편익분석]
-식품공업협회 회원사 사례조사, 추가비용과 사회적 후생변화 추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시행
- [최근 수행된 이물관련 연구사업 보고서, 토론회, 발표자료 등 총합분석]

분석에
이용한
자료
목록

- [이물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규제영향 분석연구(2011)등 식약청 보고서 11편]
- [소비자불만사례 분석자료(11, 12)-소비자단체협의회]
- [식품이물발생현황 및 관리 방향(11)-보사연]
- [이물발생신고 건수 발표자료(06년이후)-식약청]
- [식품이물정책 설명회 자료(08,09)-식약청]
- [식품이물 관리현황 및 방향(11)-식약청]
- [이물 관리의 법령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안(11)-식품안전협회]
- [식품제조현장에서의 이물혼입 방지 방안(08)-중앙대 박기환]
- [식량안보연구재단 회원사 제공 자료]



국내외 이물관리제도 체계 비교

주요 국가별 식품이물 정의 및 사례 요약

국가	이물정의 및 행정처분	사례
한국	- 정의 : 정상 약품의 식품 성분이 아닌 물질 - 동물성이물, 식물성이물, 광물성이물을 위해 우려 이물, 혐오성이물, 섭취부적절이물로 분류하여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리콜,시정명령,영업정지,벌금,징역 등	• 00기업 과자에서 4mm금속조각 검출(12.8월) → KFDA 조사 후 제조과정 혼입으로 판명되어 기업체 자진회수 • ##기업 물만두에서 철 수세미 조각 발견 신고 (12.10월)→ 상기와 동일처리
미국	• 정의 : 이물의 기준/규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재량권 부여함 *단, 나와서는 안될 이물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리콜 명령 등)를 취함 • 행정처분 : 리콜,시정명령,영업정지,벌금,징역 등	• Sherwood Brand社의 사탕 1개 제품에서 금속조각 발견 클레임(2009.2월) →FDA에서 해당일자에 제조된 30여종의 사탕류를 리콜조치함 • Wegman社의 이탈리아 소스에서 유리조각 발견 클레임(2006.11월) →FDA에서 해당일자에 제조된 전제품 리콜 조치함
일본	• 정의 : 생산,저장,유통과정에서 혼입된 모든 물질 -동물성이물(유충,기생충 등),식품성이물(곰팡이 등), 광물성이물(자갈,금속,유리 등) • 행정처분 : 리콜,시정명령,영업정지,벌금,징역 등 ※ 세균이 아닌 이물에 의해 후생성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매장에서 구입한 식빵에서 길이 4cm 바늘1개가 나왔다고 클레임제기(2010.5월) →경찰은 점포내 식빵을 회수하여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함 ※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는 경우 제조사, 유통점 및 보건소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보상,리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주요 국가별 식품이물 정의 및 사례 요약(계속)

국가	이물정의 및 행정처분	사례
중국	• 제품가공시 요구되는 표준원료 외 첨가된 물질 - 동물성이물,광물성이물,식물성이물 등 • 행정처분 : 제품가격의 10배이하 벌금,보상금 지급 * 단, 중대 식품안전사고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취함	• 봉지라면에서 이물(볼트,너트 혼입) 때문에 소비자가 입안에 상처를 입음 → 회사에서 소비자를 방문하여 금전 보상함 • 今麦郎 용기면에서 길이 4cm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클레임 제기 → 1BOX보상으로 해결됨
EU	• 정의 : EU회원국들은 EFSA(EU Food Safety Authority)가 제정한 PL법을 기본적으로 따름 - 단, 중요 쟁점사항은 개별국의 선택사항으로 위임 • 행정처분 : 당사자간 합의, 리콜 등	• 英 제빵회사 빵제품에서 유리조각,톱니바퀴 조각 이물질 발견(2005.9월) →제조결함으로 판정되어 유통되는 전제품 리콜조치와 EFSA의 결정에 의해 대중매체를 통해 해당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대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
그러나 치명적인 신체결함 및 물질적 손해가 아닌 이상 대부분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향임.

국내 식품위생법에서의 이물

이물의 정의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로 동물, 동물의 털, 유충과 배설물 등 동물성과 곰팡이, 짚, 겨 등 식물성, 흙, 모래, 유리, 금속 등 광물성을 말함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소량의 이물, 2mm 미만 크기 금속성 이물 허용



보고 대상 이물 범위

구분	이물의 종류
위해 우려 이물	-3mm 이상 크기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물질
혐오성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곤충류(유충 포함), 기생충 및 그 알
섭취 부적절 이물	- 곰팡이류[유통 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경우 제외] - 고무류, 나무류, 동물의 뺏조각, 이빨, 돌 - 담배꽂초 등

외국의 이물 정의

미국

- The Food Defect Action Level에 의함
- 건강에 위해 하지 않고 자연발생 혹은 피할 수 없는 결함의 최대 수준 제시
- 날카로운 이물, 길이가 7~25mm 로 단단한 것, 날카로운 것
- 눈에 보이는 오물, 기생충 포함 (FDA)
- 정량적 관리 (커리 분말 : 곤충 조각 100개 혹은 그 이상, 서류 털 4개나 그 이상 /25g 등)

일본

- 이물에 대한 관리에서 보고, 조사 기준 없음
-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규제
- 이물관련 민원의 우선순위는 식품위생법 제6조 (인체 위해 이물) 위반, 제11조 (기준 및 규격) 위반 여부 검토, 감시원이 조사 판단

중국

- 식품안전법에서 정상 원료와 제도가공 중 모든 비정상물질로 정의하여 엄격히 규정
- 이물사고 발생시 양자간 보상금 지급에 의한 합의 권장하며 제품가격비교 상한액법으로 규정

외국의 이물 정의



- 미국과 같은 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음
- 식품 오염에 대한 일반 규정만 있음
 - food shall not be placed on the market it is unsafe.
 - Food shall be deemed to be un safe if it is considered to be :
 - (a) for injurious to health
 - (b) unfit for humen consumption

중국의 이물 클레임 유관 위반 행위 발생시 행정 처분

위반 행위	벌칙/벌금
◆ 식품 안전법 제 85조 4항 곰팡이, 변질, 유충발생, 불청결, 이물혼입 등 제96조 품질 문제로 소비자 인체 건강 및 자산에 영향 끼칠 경우	본제품 가격의 5배 이상 또는 10배 이하의 벌금 보상금외 제품 가격의 10배 이하 벌금
◆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41조 제품 이상으로 소비자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2조 제품 이상으로 소비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의료비용, 간호비용, 근무 손실 비용등 을 지불 생활 보조금, 배상금, 생활비 등을 지불 장례비용, 사망 배상금, 보조금 등을 지불

참고 자료:

- 소비자 권익 보호법 식품
- 상해시 소비자 보호 조례
- 식품 회수 관리 규정
- 식품 안전법
- 제품 질량법 (품질 관리법)

이물관리의 국제적 추세

-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물혼입을 완전 무결점으로 규정하지 않음
- ☐ 불가피한 이물의 경우 정량화 및 최대허용치 규정
 - 미국 FDA는 DALs (Defect Action Levels) 로 120여개 품목의 20여종 결점 분류하여 식품별, 단계별, 원인별로 구분하고 검사법 제시
- ☐ 범죄행위 및 중대한 인체위해 이물에 대해 조치를 취함
- ☐ 통상 품질(혐오감)과 안전성(인체직접위해)을 구분하여 관리
- ☐ 국가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는 국내법과 크게 다름

III 현행 이물관리제도의 문제점

이물 보고제 시행 이후 산업체 투자 증가

□ 이물 저감화를 위한 설비 내역 및 소요비용(2008년 이후)

설비명	수량(건)	총금액(천원)	평균금액(천원)
X-Ray검출기	102	6,097,800	59,782
이물선별기	8	582,000	72,750
금속검출기	141	3,055,000	21,666
자석봉	63	372,000	5,904
롤자석	21	460,000	21,904
시설보완/공사	83	6,034,700	72,707
기타	112	3,082,100	27,518
총계	530	19,683,600	282,231

□ 이물 저감화를 위해 보강한 조직 및 인원(2008년 이후)

- 6개 분야 : 총 388명(62개 업체)
- 우선순위 : 원료선별 > 생산 > 품질관리

(식품안전협회 자료)

현행 이물관리제도의 문제점

기본 방향

- [인간의 건강 위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 [소비자와 관련산업을 함께 보호하는 차원의 적절한 균형유지]
- [국가 안전관리의 범위와 기업의 품질관리 영역의 구분 필요]
- [강제적 규제의 수준은 범 국가적 효과와 비용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임]
- [행정당국의 업무 수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

현행 제도의 한계

- [현재 보고되는 연간 3,000여건의 혼입 현장확인 및 원인규명 불가능]
- [현장 확인을 하여도 원인 불명확 사례가 50% 내외]
- [이물혼입 사고가 단발성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 [관리부실과 블랙컨슈머의 구분 애로]
- [원인규명으로 인한 성과에 비해 비효율적인 투자(시간, 경비)]

현행 이물관리제도의 문제점(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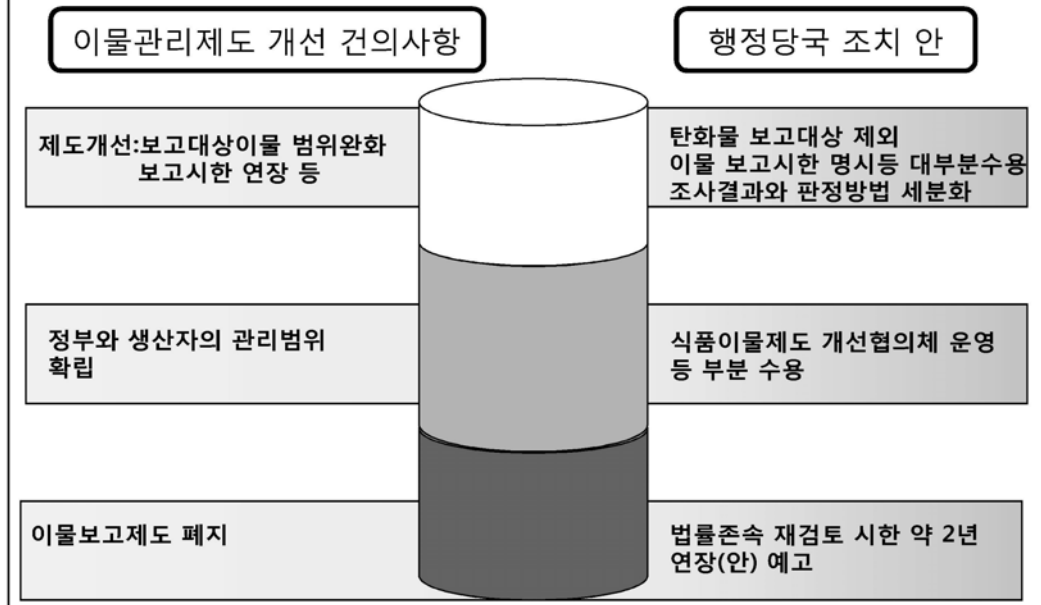
제안의견 종합

- [완전무결한 이물관리는 불가능, 규제강화시 기업활동 위축 우려]
- [허위신고 처벌 강화]
- [이물저감화에 대한 업체의 실정에 맞는 대처방안 구축]
- [이물관리는 업체자율화로 하고 위해도 높은 분야만 행정당국 관리]
- [이물관리에 효과대비 비용투입이 과다]
- [이물신고시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필요]
- [이물에 대한 소비자 교육확대 및 강화]
- [위해이물과 품질관련이물의 구분관리]
- [대 언론보도는 사실확인 후 결정(억울한 피해 방지)]
- [보고기한 연장]
- [처벌위주에서 재발방지, 시설보완 및 교육강화 등 우선]

IV

현실적 관리방안 제안

이물관리제도 건의사항과 행정당국의 조치



현실적 관리 방안 제안

◎ 이물 의무 보고제 현행 법률준속 재검토 기한에 폐기 검토

- 이물 보고제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 미흡
- 기대효과 대비 식품산업체의 투자비용 막중
- 행정당국의 업무 부담 증대

◎ 발생 이물 위해도 분류에 의한 관리 주체 분리

- 현행신속조치대상 이물 - 현행대로 행정부 관리
- 신속조치대상 이외 이물 - 산업체 자율관리 혹은 단체에 위임

◎ 식품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 운영 중인 언론 중재위원회의 예를 활용

현실적 관리 방안 제안-1

◎ 이물 의무 보고제 현행 법률준속 재검토 기한에 폐기 검토

- 이물 보고제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 미흡
- 기대효과 대비 식품산업체의 투자비용 막중
- 행정당국의 업무 부담 증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검토시한
연장을 위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 12-209호(12. 9.2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 ----- ----- ----- -----2015년 11월 30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현실적 관리 방안 제안-2

◎ 발생 이물 위해도 분류에 의한 관리 주체 분리

- 현행신속조치대상 이물 - 현행대로 행정부 관리
- 신속조치대상 이외 이물 - 산업체 자율관리 혹은 단체에 위임

신속조치대상 이물 처리체계에서 정한 대상이물만 행정당국 관리

이물 혼입 원인조사는 소비·유통·제조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다만, 다음 이물은 신속조치대상 이물로 구분하여 소비·유통·제조 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

-
- 쥐, 유리·사기 조각(7~50mm),
 - 칼날·나사·못·바늘 등 유사형태 금속성 이물(7~50mm)
-

※ 이물의 크기가 3~6mm, 51mm 이상인 경우는 소비유통제조 단계별로 순차 조사

현실적 관리 방안 제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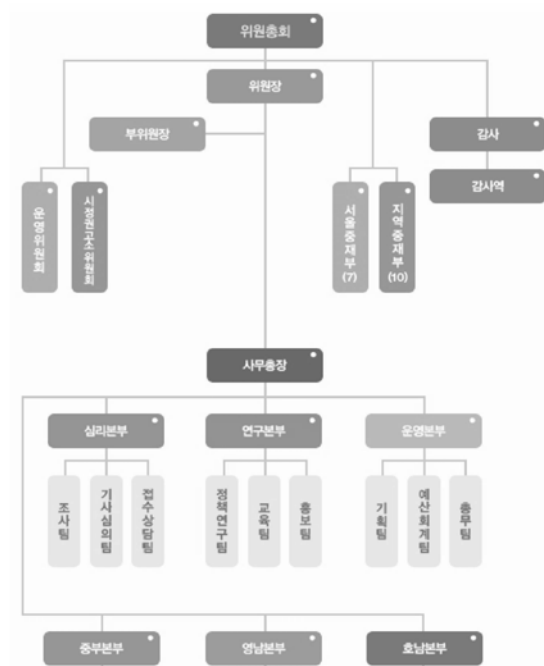
- ◎ 식품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 운영 중인 언론 중재위원회의 예를 활용

2012년도 9월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가. 청구권별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 제 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하		계 류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동의	이의	계속				심리 전	심리 중					
1~8월	정정	902	717	333	28	28	2	166	15	3	166(143)	160(114)	1	65.0	76.8	70.1	
	반론	220	151	75	3	3	1	26	10		59(54)	43(26)		72.9	82.8	75.6	
	추후	66	5	2	2						61(60)	1(1)		100.0	100.0	97.0	
	손배	493	376	164	16	21		105	11	2	103(96)	70(43)	1	58.8	72.1	60.6	
소 계		1,681	1,249	574	49	52	3	297	36	5	389(353)	274(184)	2	64.1	76.2	70.9	
9월	정정	65	18	10			1	7			14(10)		33	58.8	61.1	64.5	
	반론	25	7	3							3(3)	4(3)	15	100.0	100.0	100.0	
	추후																
	손배	37	14	9			1	2		1	5(1)	2(1)	17	81.8	85.7	61.1	

언론중재 위원회 조직도



이물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안)

◎ 연간 이물신고 건수(3,000건 내외) 기준하면 언론중재 신청건수와 비슷

◎ 그러나, 조정이 필요한 사고건수는 10% 미만이므로 6개 지방청별로 위원회 1개씩 운영하면 충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타 위원회 운영 조직과 예산소요가 유사 할 것임

◎ 각 위원회는 지방법원 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와 공무원 등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3. 식품 이물 의무보고제도의 비용편익분석

고려대학교 양 승 룡 교수





Profile

양 승 룡

학 력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

미국 퍼듀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

경 력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농림수산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 협의회 위원

농림수산물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식품이물 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1959
KOREA UNIVERSITY
EARTH SAVER

2012.11.5

Food & Resource Economics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Contents

- I . POS data 분석
- II . 소비자 조사
- III . 식품업체 조사
- IV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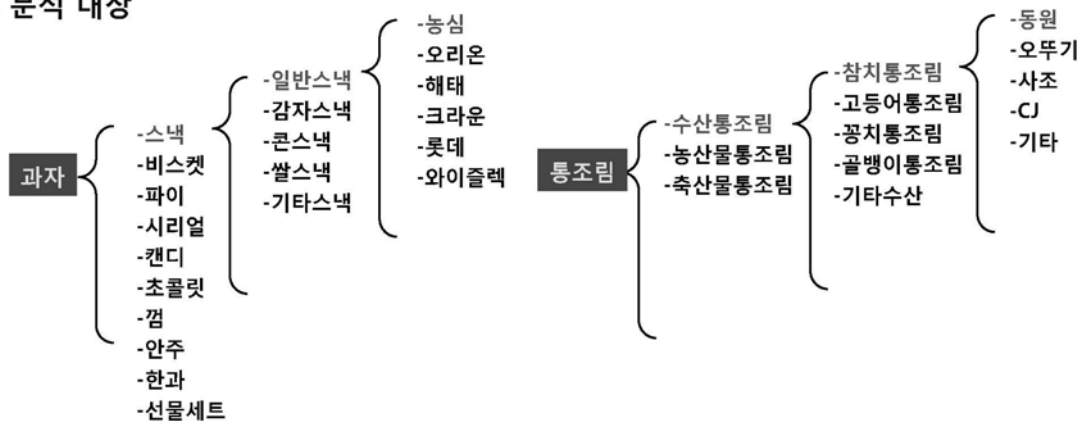
I . POS data 분석

I . POS 분석

1. 기간

-2006년 1월-2011년 12월(72개월)

2.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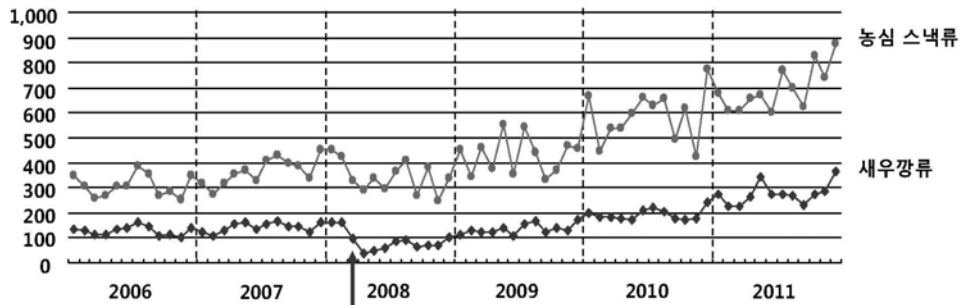
농심 새우깡(이물사고 2008.3.17)

동원 참치캔(이물사고 2008.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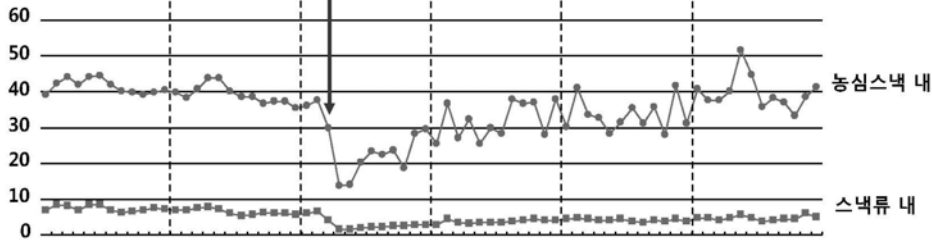
3. 스낵류

I. POS 분석 II III IV

(1) 매출 (백만원)



(2)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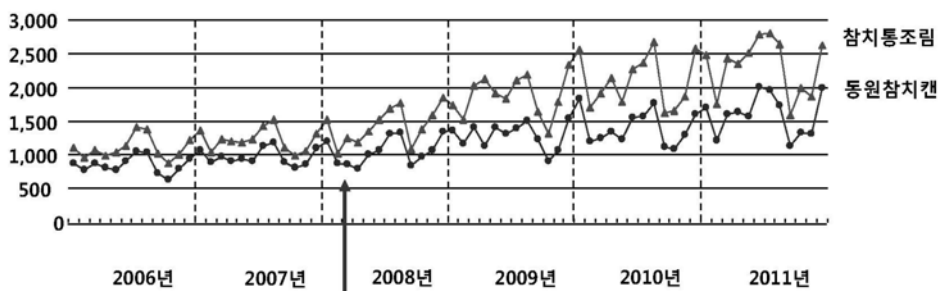
○ 새우깡류(2008년 2월 vs 4월)

매출: 159,917천원 → 39,877천원 (75.1% ↓), 점유율(농심스낵 내): 37.55% → 13.80% (6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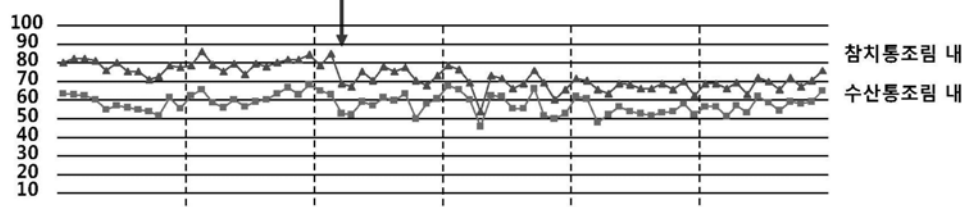
4. 참치캔류

I. POS 분석 II III IV

(1) 매출 (백만원)



(2) 시장점유율(%)



○ 동원참치캔(2008년 2월 vs 4월)

매출: 869,836천원 → 800,597천원 (7.96% ↓), 점유율(참치통조림 내): 84.89% → 67.23% (20.8% ↓)

5. 이물사고 영향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I. POS 분석

II III IV

	새우깡		참치캔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nstant	-9.801	-0.319	45.569**	3.386
Incident	-0.528**	-3.018	-0.150	-1.810
Expenditure	1.709	0.964	-2.045*	-2.307
M1	0.077	0.689	0.162**	2.899
M2	-0.022	-0.268	-0.126*	-2.279
M4	-0.001	-0.004	-0.206*	-2.467
M5	0.096	0.587	-0.171*	-2.036
M6	0.026	0.153	-0.090	-1.048
M7	0.129	1.081	0.083	1.484
M8	0.099	0.796	0.092	1.462
M9	-0.153	-1.197	-0.285**	-4.511
M10	-0.088	-0.655	-0.358**	-5.286
M11	-0.156	-1.186	-0.253**	-4.032
M12	0.116	0.874	0.008	0.114
Adjusted R ²	0.869		0.872	
D-W	2.048		2.044	

(): standard errors, *(**): 5%(1%) level

II. 소비자 조사

1. 설문 기간

- 2012년 3월 15일-2012년 4월 5일(20일간)

2. 설문 인원 및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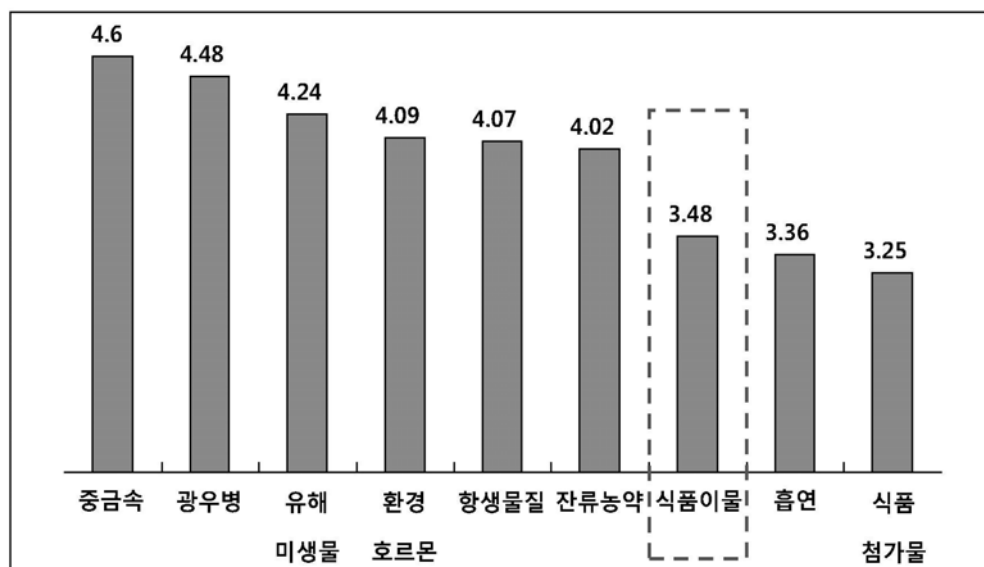
- 총 363명(인터넷 207명, 오프라인 156명) 중 348명

3. 주요 설문 내용

- 식품 이물에 대한 인지 및 대응 행태
- 식품 이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와 보상요구금액(WTA)

4. 식품 이물에 대한 인지 및 구매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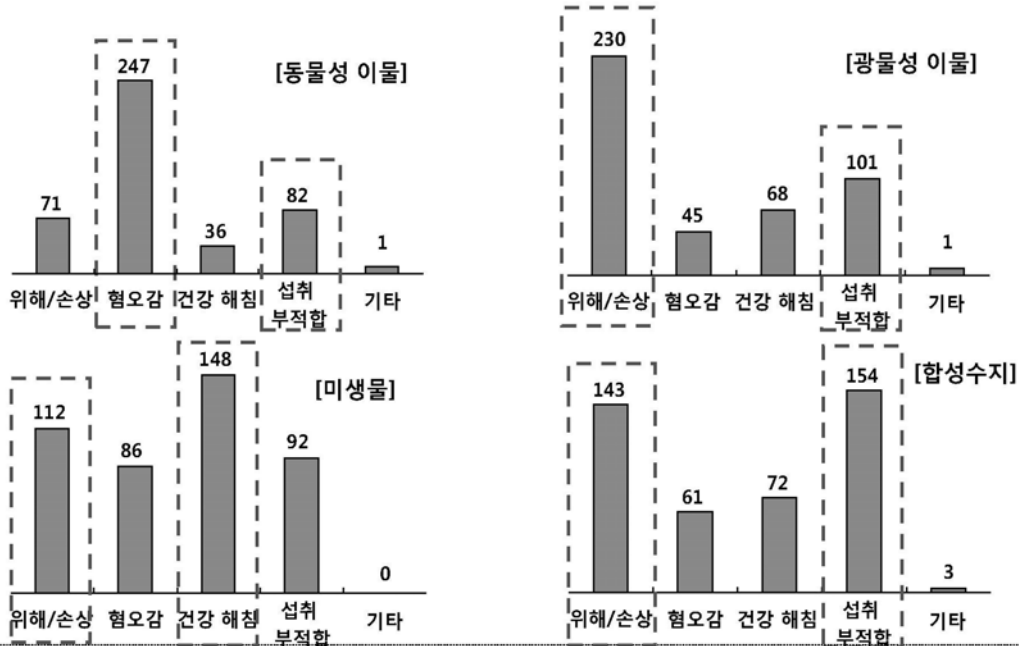
1) 위해 요인들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1점 보통; 5점 매우 불안)



4. 식품 이물에 대한 인지 및 구매행태 변화

I II. 소비자 조사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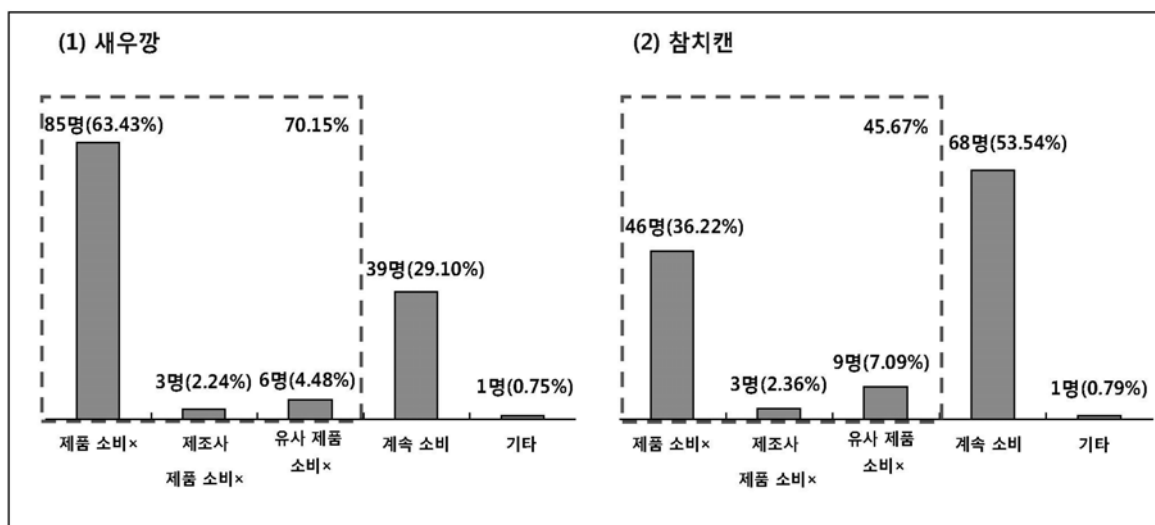
2) 이물에 대한 느낌(단위 : 명, 중복 응답)



4. 식품 이물에 대한 인지 및 구매행태 변화

I II. 소비자 조사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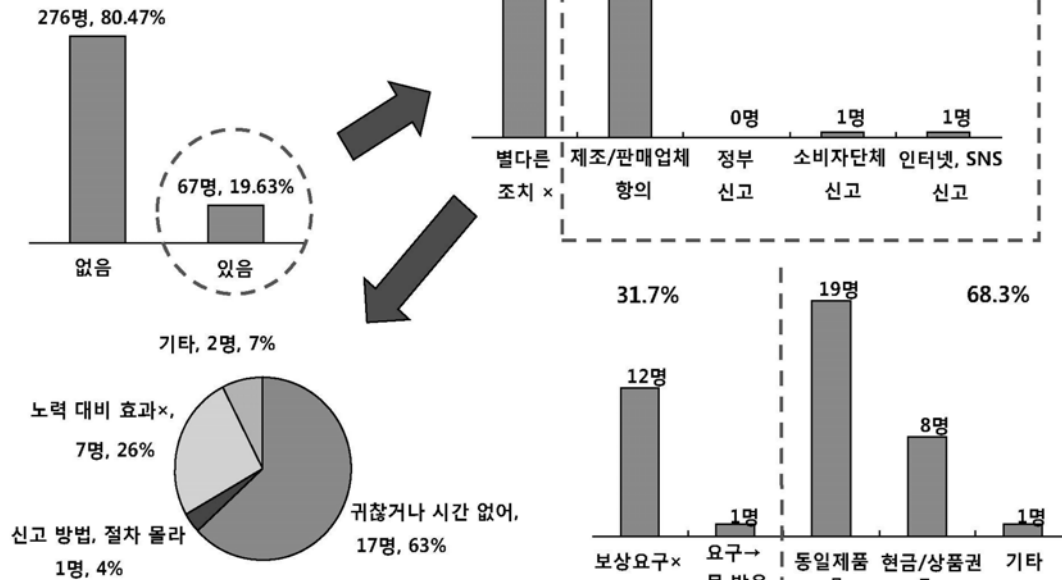
3) 이물 사고 후 구매행태(단위 : 명)



4. 식품 이물에 대한 인지 및 구매행태 변화

I II. 소비자 조사 III IV

4) 이물 발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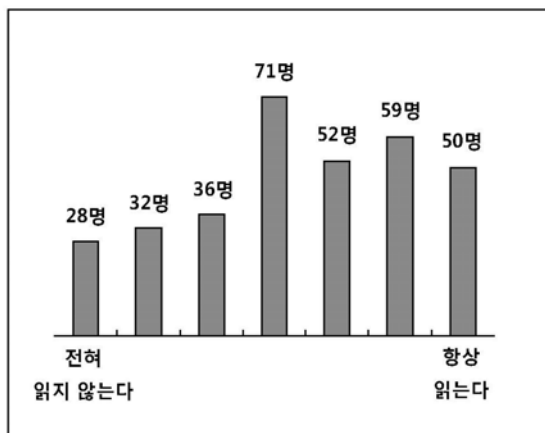


4. 식품 이물에 대한 인지 및 구매행태 변화

I II. 소비자 조사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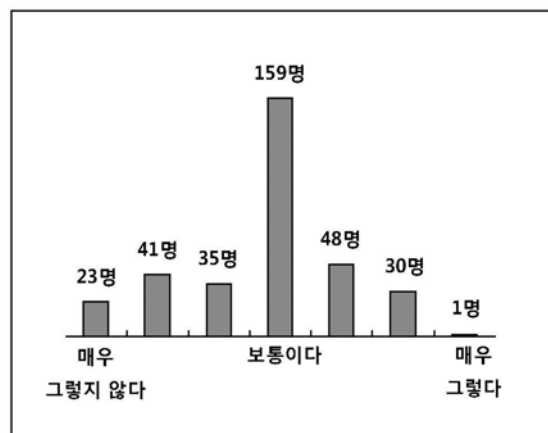
5) 표시사항 확인(섭취 시 주의사항)

4.42점 (7점 = 항상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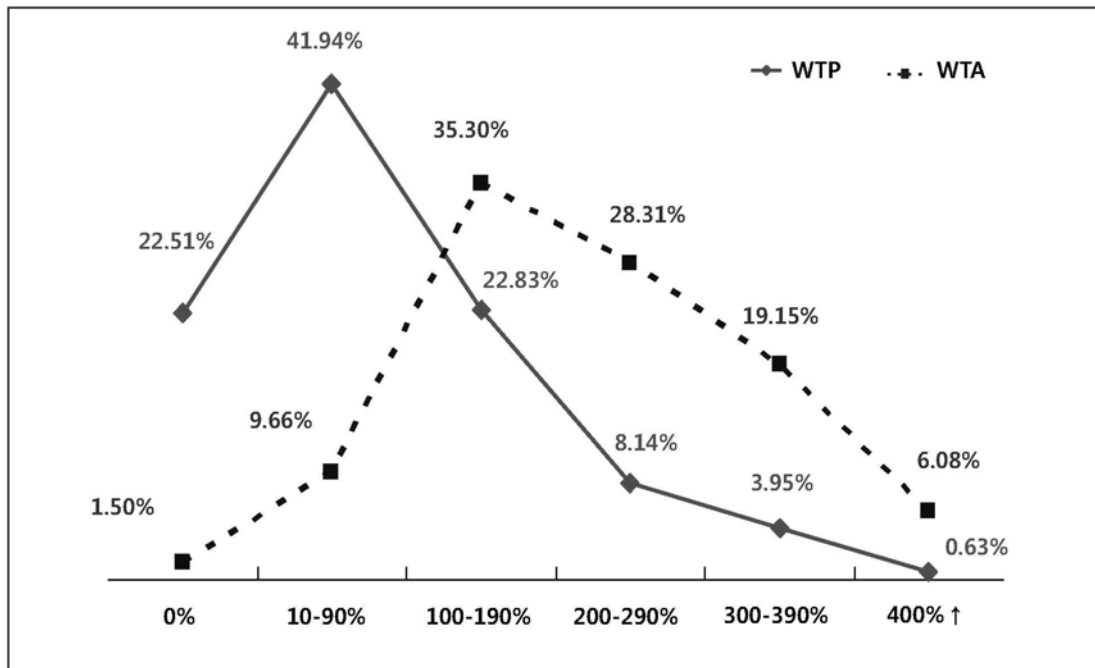
6) 제도가공업체의 이물관리

3.87점 (7점 = 매우 잘 하고 있다)



5. 지불의사금액(WTP) vs. 보상요구금액(WTA)

I II. 소비자 조사 III IV



5. 지불의사금액(WTP) vs. 보상요구금액(WTA)

I II. 소비자 조사 III IV

	WTP	WTA	t-값 Ho: WTP = WTA
평균	72.00	206.53	23.20
직접적 위해 (금속류 등)	71.20	212.82	11.92
혐오감 (동물 사체)	85.44	230.23	10.75
섭취 부적합 (고무류 등)	71.55	205.64	12.50
의무 비대상 (종이류 등)	59.84	177.97	11.99

Ⅲ. 식품업체 조사

1. 설문 기간

- 2012년 8월 17일-2012년 8월 29일(13일간)

2. 설문 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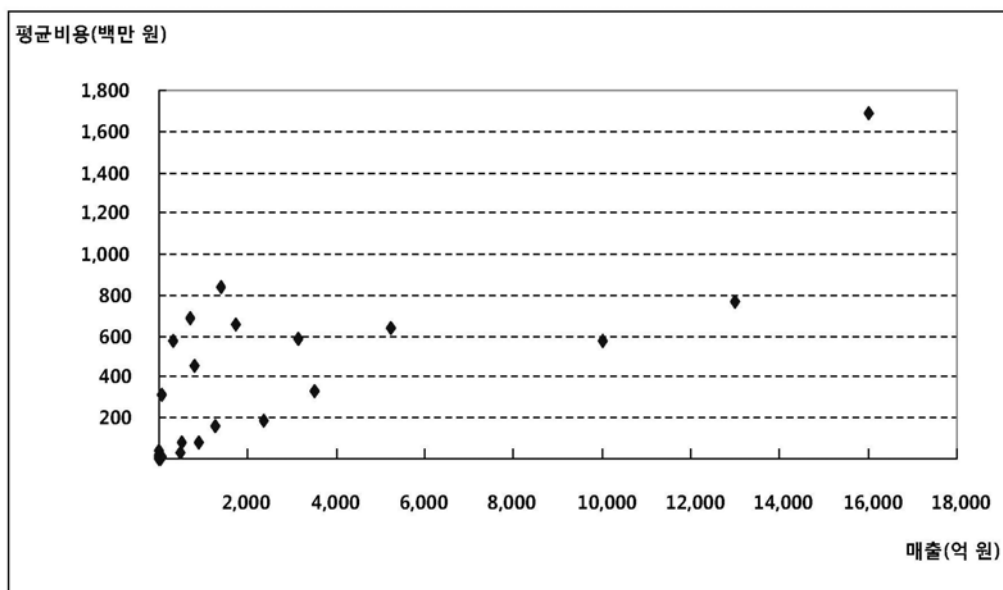
- 총 28개 업체

3. 주요 설문 내용

- 식품 이물 발생 방지를 위한 2011년 시설, 인원, 시스템 투자 비용

4. 매출액 vs 이물 방지 평균 비용

I II III. 식품업체조사 IV



5. 식품업체 투자 비용

I II III. 식품업체조사 IV

매출	업체수	조사업체수	평균비용(천원)	총비용(억 원)
10억원 미만	19,842	4	8,000	1,587
10-100억원	2,724	10	57,365	1,562
100-1000억원	349	8	343,365	1,198
1000억원 이상	59	6	1,717,255	1,013
합계	22,974	28		5,361

주 : 업체 수 2011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결과	비고
이물 발생 (A)	604	2011년 제조단계 기준 (2010년은 431건)
전체 품목수 (B)	53,891	식품+건강기능식품(2011년)
매출액 (십억원) (C)	34,907	식품+건강기능식품(2011년)
지불의사금액(WTP, 십억원)	282 ($\frac{A}{B} \times C \times 72\%$)	
보상요구금액(WTA, 십억원)	813 ($\frac{A}{B} \times C \times 207.8\%$)	
식품업계 비용(십억원, 2011년 기준)	536	282백만 원/업체(2008년 이후) (신동화 2011)

IV. 요약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I II III IV.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식품이물 사고 후 소비행태 변화

- 해당 식품과 제조사 뿐 아니라 해당 식품군에 영향을 미침
- 충격의 형태와 회복 시간은 식품종류와 이물종류에 따라 상이

○ 소비자의 20% 식품 이물 경험

- 신고하는 경우(61%) 68%가 동일제품(1.8배) 또는 현금(125%)로 보상
- 소비자 보상요구 수준 207%

○ 식품이물 의무보고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소비자 추가부담의사금액 (2,820억 원)	<	식품업계 투자비용 (5,360억 원)	<	소비자 보상요구금액 (8,130억 원)
----------------------------	---	-------------------------	---	--------------------------

2. 식품이물관리 정책 제언

I II III IV. 요약 및 시사점

○ 식품이물관리 정책에 대한 제언

- 업체 자율관리 중심으로 유도
- 이물 방지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 : 특히 매출 10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 중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의 이물사고 보상기준 개선 필요

감사합니다.

양승룡 교수(sryang@korea.ac.kr)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bumbumbar@yuhan.ac.kr)

유한대학교 식품영양과

토론회 좌장



신동화식품연구소
신 동 화 교수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경 력

(사)한국식품안전협회장

신동화식품연구소 소장

(사)한국장류연구회 회장

식품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청)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사)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식품공학전공 교수(현 명예교수)



토/론/문

한국식품산업협회 송 성 완 부장





Profile

송 성 완

학 력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산업경제학과 경제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 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자체규제심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성평가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 제도개선 혁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연구사업, 한국식품공업협회, 2006
아크릴아마이드 모니터링 연구사업, 한국식품공업협회, 2007

식품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포지

1. 식품업계의 이물저감화 노력

지난 2008년 이물혼입 사건이후 식품업계에서는 혁신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사적인 이물저감화 노력을 실시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식품중 이물을 엄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 6월부터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기업 뿐 만아니라 식품산업계 전반의 이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OEM협력사간 식품이물 자율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기업의 이물관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물관리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에 걸쳐 500여 개사가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물저감화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곡물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2010~2012까지 3개년에 걸쳐 약 2,153억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식약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도 알수 있는 데요. 매출액 500억원 이상 상위 20개사 생산량 대비 이물보고 건수가 100만개 당 이물발생건 수는 0.15건으로 6 시그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이물보고 및 조사체계의 문제점

지난해 1월부터 이물보고가 의무화되고 24시간 인터넷 이물보고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물보고 및 조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식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단발성 이물에 의한 회수발생 시 식약청 위해정보 사이트에 공개되면 수출된 제품이나 통관중인 제품에 대하여 해당국가로부터 리콜이나 자료조사 및 입증 등을 요구받기도 하고, 일본의 모 업체의 경우는 SNS를 통해 한국 업체의 품질을 비교하면서 일본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기업을 위협하는 블랙컨슈머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이물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100여개 업체로부터 1,600만원 상당을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된 블랙컨슈머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식품기업이 언론고발이나 기업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컨슈머를 양성하는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물조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원인규명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물보고에 대한 정부의 원인규명 기간은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고 습니다. 이를 행정력으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원인 규명된 조사결과가 “판정불가”로 확정될 때에는 오히려 정부와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져 소비자클레임 상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4시간 내 보고의무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접수 후 24시간 보고의무로 인해 이물의 정체가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자체조사 결과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고 이물에 따라 정체를 규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보고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한 이물보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영업자는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의도적이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정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실한 보고자가 정부나 국회 등을 통하여 업체명은 물론 제품명까지 공개되고 있어 성실한 보고자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공개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제도개선 방안

앞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물보고 및 조사체계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물 보고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보고대상 이물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속이나 유리로 한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공개도 이들 이물이 발생한 경우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식품이물관리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를 업계 자율관리로 전환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품이물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이물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처분만을 강화하는 네가티브 방식보다는 이물보고를 자율화하여 업계 스스로가 저감화 노력과 함께 품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이물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과도기적으로 협회나 제3의 기관에서 이물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문

한국소비자원 식품안전국 신 용 묵 국장





Profile

신 용 묵

학 력

건국대 법학박사(2003년)

경 력

1987~2012 현재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국장, 소비자안전국장역임)

식품이물 관리체계 관련 토론문

1. 소비자보호와 관련 산업보호는 보호법익이 달라 상호비교 곤란
 - 소비자와 산업을 함께 보호하는 차원의 적절한 균형유지를 하자는 주장은 현실성 부재
2. 국가 안전관리 목적과 기업의 품질관리 목적은 상호 상이
 - 국가 안전관리범위와 기업의 품질관리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관리 목적이 다른 것을 함께 논할 수 없어 무의미
3. 강제적 규제로 인한 효과와 비용 분석은 입법 당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논의 하여 적절한 규제수준으로 결정
 - 정부규제 완화시책에 이미 반영
4. 행정당국의 업무량은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피해관련 행정서비스 수요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
 - 행정서비스 수요발생 원인제거가 최우선
5. 혼입현장 확인과 원인규명은 최선을 다해야
 - 혼입현장 확인 및 원인규명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식품안전 국가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필요
6.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원인규명의 확률이 높아지는 사실 인식
 - 현장 확인을 하여도 원인 불명확 사례가 50%내외라는 주장은 원인규명이 가능한 50%에 대한 중요성을 부인하는 결과 초래
7. 단발적 이물혼입사고에서도 추적이 가능한 위해성 내재
 - 이물혼입사고가 단발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은 한 건의 추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려는 원래 목적과 상치

8. 관리부실과 블랙컨슈머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합
 - 관리부실과 블랙컨슈머 구분 모호하다는 주장은 블랙컨슈머의 원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
9. 원인규명으로 인한 성과는 사전에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안전시책의 특징
 - 한 건의 피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사례를 미리 발견하여 다발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잘못 이해
10. 이물규제는 완전무결한 이물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견된 이물사고를 사전에 방하려는 취지
 - 완전무결한 이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규제 강화 시 기업 활동 위축 우려된다는 주장은 반대로 이물관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개선을 통해 위해사고를 사전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증
11. 이물의 경우 자기가 넣은 경우 이외에는 허위신고로 처리하기 곤란
 - 허위신고 처벌 강화라는 주장은 이물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신고자도 모르기 때문에 이물신고의 특성상 강화 곤란
12. 이물저감 대처방안은 위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
 - 이물 관리시책은 이물저감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물에 대한 추적을 통해 다발 위해사고를 막으려는 취지
13. 이물관리에 있어 위해도 높은 이물 여부는 원인규명 이후에 인지 가능
 - 이물관리는 업체자율로 하고 위해도 높은 분야만 행정당국 관리하자는 것은 위해도 경중의 판단이 사전에 구분되기 곤란한 현실을 간과
14. 이물관리에 효과 대비 투입비용의 감소는 생산·품질관리 기술 혁신이나 경영노하우로 대처할 사항
 - 기업마다 투입비용이 상이하고 이물관리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단편적 시각에 불과

15. 이물신고 시 신고자의 피해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 기준적용 곤란
 - 피해자에 따라 실 손해 발생내역이 다르고 생명 신체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르므로 일률적 기준 적용은 현실적으로 부적합
16. 고의로 이물을 넣어 보상을 노리는 소비자 이외에 교육 강화 불필요
 - 이물 신고자를 블랙컨슈머로 전제하거나 품질관련 이물은 위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라면 교육 강화 불필요
17. 위해이물과 품질관련 이물은 원인규명 이후에 확인 가능
 - 이물을 사전에 위해한 이물과 무해한 이물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
18. 소비자나 단체가 대언론 보도를 요청하여도 안전성에 관한 언론보도 결정은 언론사 소관사항이므로 사전 보도통제 불가
 - 국가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단체는 고의가 아닌 이물사고라면 품질불량에 대해 문제제기 가능하고 안전성을 의심하는 기사는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
19. 위해이물 혼입의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안전과 직결되므로 처벌조항 존치함이 필요
 - 원인규명 결과 경미한 내용의 이물인 경우 현행제도에서도 시설보완을 통한 재발 방지 가능
20. 식품이물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운영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국가(한국소비자원)에서 이미 이물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필요. 오히려 새로운 규제, 비효율로 작용할 수 있음

토/론/문

식품음료신문 이 군 호 사장





Profile

이 군 호

학 력

중앙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경 력

산업통신 경제부 기자

보건신문 부국장

제일경제(현 아시아경제) 편집담당 상무

보건신문 사장

現 식품음료신문 발행인 겸 사장

現 한국전문신문 협회 이사

現 한국초콜릿카카오협회 자문위원

現 ILSI KOREA 자문위원

現 전국FOODBANK 자문위원

現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위원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토/론/문

녹색소비자연대 조 윤 미 공동대표





Profile

조 윤 미

경 력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물관리제도 개선방안

◇ 이물관련 소비자클레임 동향

-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 중 이물관련 상담은 매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공식품의 안전·위생 상담 중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물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연간 분류별 가공식품 안전·위생 상담건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변질 · 부패	374	8.9	627	8.7	807	10.0
이물질	2,544	60.8	3,381	46.7	3,577	44.3
이상반응	409	9.8	1,639	22.6	1,984	24.6
유통기한	736	17.6	1,325	18.3	1,367	16.9
기타안전위생	123	2.9	270	3.7	344	4.3
계	4,186		7,242		8,079	

- 식품관련 전체 상담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0.5% (총24,224건) 2010년 12.0% (총28,290건) 2011년 10.8%(33,082건)로 10%대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다칠 우려가 있는 금속, 유리 등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벌레, 곰팡이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지 알 수 없는 이물을 호소하는 기타이물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 소비자클레임에서 나타난 이물종류의 년도별 추이

구분	침전물	비닐/고무/실	금속/유리/돌/플라스틱/나무	머리카락/털/손톱	벌레	곰팡이	기타 이물질	총합계
2009	14	116	331	86	615	289	719	2,170
2010	12	362	141	76		414	1,386	2,391
2011	8	273	95	67		393	1,506	2,342

◇ 식품에서의 이물질 발생문제

- 소비자에게 식품에서 발생하는 이물 문제는 제조와 유통과정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신경써서 음식을 만든다 하여도 간혹 이물질이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여도 일정 비율로 이물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이해는 있습니다.
-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물질을 접하게 되면 제품 공정 전체나 관리체계, 유통단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물질이 식품생산과 유통에 있어 위생, 관리 수준을 대변해 주는 척도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사회에서 이물질 이슈가 발생된 이후 다양한 제조, 포장, 유통단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 반면 이물질 발생이 제조와 유통 중 어느 단계에서의 문제로 야기되었는지 효과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식품제조시설에서의 이물질 발생이 감소되지 않는 등 대규모 시설과의 위생관리수준의 격차가 벌어짐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 식품이물질 관리체계의 개선

- 현 시점에서 이물질 발생에 대한 신고의무를 간소화하고 분쟁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해가능성이 높은 이물, 예를 들면 일정 크기 이상의 금속, 유리, 플라스틱류 등 몇 단계 등급을 나누고 위해등급이 높은 이물질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고의무 대상 이물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해가능성이 높은 이물질을 중심으로 제한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상반응 중 소비자 위해나 증상이 심각한 사례에 대한 신고의무를 추가하는 등 식품기업이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조치 또는 발생빈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관리체계를 정비하면서 이물질 신고내용과 형식을 재정리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분쟁조정업무의 민간이양에 대한 검토

- 이물질 발생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민간영역에서 위탁 또는 위임의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물질 이슈가 발생하였을 당시 소비자단체에서도 검토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 분쟁조정은 기업과 소비자간에 책임소재를 놓고 이견이 있을때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물질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이견의 발생이라기 보다는 이물질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조나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개인기업의 제조나 유통공정 전반을 점검하는 기능을 분쟁조정위원회에 기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일률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이상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법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깊이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 위해가능성이 낮은 일반 이물질은 기업차원에서의 대응과 현재 소비자단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합의중재를 통한 분쟁조정을 활발하게 해 나가는 방식으로 유지해 나가고 위해가능성이 높은 이물질 발생에 대해서는 공정전반에 걸친 충분한 현장점검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관리기능이 유지되도록 신고체계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없도록 다듬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

토/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 지 현 박사





Profile

최 지 현

학 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및 대학원 농업경제학과(경제학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식품경제학 박사

경 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
농식품부 OECD 식품경제분야 자문위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위원회 심의위원
농식품부 농식품안전정책 자문위원
농식품부 식품유통 및 식품산업정책연구 평가위원
한국농업경제학회 상임이사

토 론 자 료

- 식품이물 관리제도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기로 함.
- POS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심새우깡과 동원참치캔 이물사고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출감소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시장반응이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소비자조사에서 식품이물에 대한 불안감 척도가 3.48로 중금속, 광우병, 유해미생물, 호르몬 항생물질, 농약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물의 종류에 따라 더 높게 측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업체의 이물방지를 위한 투자비용 계측은 쉽지가 않은 분야임. 특히 시설자체가 이물방지에만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투자비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19페이지에 있는 총투자비용은 28개업체 조사결과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표본수가 적어 적용에 무리가 있음.
- 이물발생을 새우깡과 참치캔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준을 식품시장 전체에 적용하여 WTP, WTA를 계측한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보상요구금액(WTA) 산출시 207.8%의 근거는? 206.5%가 아닌지
- 비용편익분석은 이물질이 발생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개념을 고려한 동태적 분석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B/C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물방지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은 현재의 HACCP 시설지원 사업 틀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담보능력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따라서 융자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토/론/문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 상 도 교수





Profile

하 상 도

학 력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식품공학과(졸업)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식품미생물학)

미국 Texas A&M University 이학박사(식중독미생물학)

경 력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공학부 교수(학부장)

이물관리, 시장에 맡길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연쇄적인 이물사건으로 세계 최초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근거해 보고 의무대상 이물을 고시했다. “이물보고 의무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2012년 올 상반기에는 식약청에 2,007건의 이물이 보고되었고, 벌레, 금속, 곰팡이, 플라스틱, 유리 등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시행된 지 3년 만에 약 절반 수준으로 이물 보고건수가 줄었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는 식약청, 지자체 등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기업체의 꾸준한 시설투자와 기술수준 향상, 작업자 교육, 소비자의 투철한 신고정신 등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이물은 100% 예방이 불가능해 미국 등 식품안전 선진국에서도 빈발한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고 위해성이 낮은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도 않는다. 이물 발생은 대부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 문제 발생 시 PL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업들은 PL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HACCP, 리콜 등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10년 당시에는 이물발생이 쓰나미처럼 보도되고 신고되었고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다보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물문제의 규모의 빈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식약청의 결심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 등의 시행은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PL(제조물책임)법도 2002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고, 회수제도 역시 1995년에 입법화되어 시행되었다. 이제는 이물문제는 정부 주도의 보고의무화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다. 다행히 2013년 1월 4일까지 폐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운영중인 “이물관리협력네트워크” 등도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는 안전관리업무 등 우선순위 높은 일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과 소비자를 믿고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식약청은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눈 딱 감고 맡기는 용기 있는 결심을 기대해 본다.

토/론/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홍 주 식** 센터장





Profile

홍 주 식

학 력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경 력

aT 양곡부장
aT LA 지사장
aT 전북지사장
aT 식량관리처장
aT 식품산업처장
aT 한식세계화사업단장
aT 국영무역처장
aT 수출개발 처장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

식품 이물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헌료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관련법과 이에 근거한 각종 규정 및 고시 등은 우리의 먹을 거리인 식품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식품위생관련 법 및 고시 등에서 다루고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물을 관리 하기 위한 비용 및 편익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식품의 이물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관련 법 및 고시 등에서 그 규제와 관리 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물에 대한 정의가 관련법과 규정 등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크기 등 그 기준도 서로 달라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금속성 이물의 경우 “식품공전”에는 그 크기가 2.0mm 이상인 것을 이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3mm 이상의 것을 이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물의 크기 뿐 아니라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통일하여야 한다. 소수점 몇 자리 까지 표시하느냐에 따라 유효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나 농산물검사규격에서 모두 이물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검사규격에는 이물의 크기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원료 농산물의 경우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바로 음식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가공과정을 거쳐 음식으로 활용하느냐에 이물의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대부분 가공 및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세척과정을 거쳐 음식물로 활용하는 원료농산물과 소비자가 바로 소비하는 가공식품은 이물에 대한 관리방법과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내용이 불분명하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광역

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규정이 있어 보고 자체만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다시 말하면 이물이 들어간 식품의 제조나 유통 중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이물혼입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식품업체가 행정당국에 보고했는지의 여부만을 따지는 벌칙이기 때문이다.

2. 식품이물관리에 따른 편익에 대하여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이물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사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그 제품의 회수비용 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식품제조 업체가 입는 손실은 제품의 회수나 소비자 보상이라는 직접적인 손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사의 이미지나 식품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 등 간접적인 손해도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사는 이물관리 비용을 계산할 때 이러한 직간접적인 손실을 모두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그 제품을 직접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는 차치하고라도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며 이 구매행태의 변화에는 소비자의 종합적인 편익 감소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이물로 인한 사회적인 편익은 더 객관적으로는 해당 제조업체의 주가(株價)의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야 식품 제조업체들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물관리를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7>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식품공전(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 ①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 ② 금속성 이물로서 섯가루는 제 10. 7. 1) (5) 금속성이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①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인체에 위해나 손상,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재질과 크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침, 클립, 철사, 바늘, 철수세미, 나사, 볼트, 너트, 베어링과 같은 물질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401호 (우 136-713)
TEL : 02-929-2751 FAX : 02-927-5201
E-mail :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Homepage : www.foodsecurity.or.kr
